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19방문0000100)

법무부 교정본부

I 권고 내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흡서기·흡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과 수용 거실의 크기와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선풍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소속 교정기관에 단순히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단수 조치는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 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겨울철 노약자, 환자, 여성수용자 등의 경우 온수목욕 횟수 및 시간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저기준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파할 것

II 권고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외국 입법례

□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18.1 특히 침구류를 비롯하여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수용시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한 한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구비되어야 하며, 건강과 위생상의 필요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기후조건과 특히 거실바닥의 넓이, 거실 공간의 용적, 조명, 난방, 환기 등을 잘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독일]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제144조 거실의 규모 및 구조 ① 휴식시간과 자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실 및 공동 생활실과 접견실은 거주하기에 편인하거나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상응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충분한 통풍시설을 갖추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난방 및 환기, 바닥면적 및 창문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이탈리아]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제6조 체재장소 및 거실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작업 및 복서가 가능하도록 자연채광과 조명으로 밝게 비치는 충분한 넓이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통풍이 좋고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품위가 있고 합리적인 종류의 위생설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미국] 범죄와 형사절차

제5035조 처결전의 유치

유치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난방·조광·위생시설·침구·의류·오락·교육과 필요한 정신병적·심리적인 또는 그 밖의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5039조 구금

구금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난방·조광·위생시설·침구·의류·오락·상담·교육·훈련 그리고 필요한 정신병적·심리적인 또는 그밖에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 의견 및 이행계획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이하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용함
- 내용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 적정한 실내온도의 준수는 과밀수용 해소·교정시설의 신축 및 현대화를 통한 냉난방시설의 완비 등 중장기적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지 단순히 적정 실내온도를 법제화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 오히려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외국 입법례에서도 실내온도의 범위를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난방” 등의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수준에 그침
- 다만, 현행 「형집행법」은 실내온도와 관련하여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어 실내온도 준수와 관련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는 타당하므로,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권고 수용함.

2.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 마련하여 시행할 것 (수용)

○ (측정 장소) 독거·혼거실 및 의료수용동 등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취약 개소를 기준으로 온도 측정

○ (측정 주기, 시간) 혹서기(낮 최고, 열대야 등), 혹한기(일일 최저기온) 기준 시간을 지정, 1일 3회 이상 측정

○ (기록 유지) 보안일일현황 기록 유지 및 수용관리 업무에 참고

○ (시행)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에 내용 포함 반영 및 시달

※ 「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06.01.)

3. 소속 교정기관에 단순히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단수 조치는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 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겨울철 노약자, 환자, 여성수용자 등의 경우 온수목욕 횟수 및 시간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저기준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파할 것 (수용)

□ 의견 및 이행계획

○ 교정시설 단수조치 지양 관련

-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한 일반적 단수조치 지양 및 여름철 폭염 대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 후 불가피한 경우 단수조치

· 소방서·수도관리사업소 급수 협조 등 방안 강구-

⇒ 증·장기적으로 저수조 용량 증설, 급수관 확장 공사 등 시설 보완 필요

-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내용 반영 및 시달

※ 「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06.01.)

○ 노약자·환자·여성수용자 등 온수목욕 횟수·시간 관련

- 노인수용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목욕

· 횟수·시간 등을 최저기준 이상 허용할 수 있도록 고려

· (대상) 노인·장애인·외국인·소년·환자·여성수용자 등

· (횟수 및 시간) 주 1회 30분 이상

- 동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내용 반영 및 시달 예정.

4. 수용 거실의 크기와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선풍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수용)

□ 선풍기 설치 현황

○ '20. 6. 현재 독거실 [redacted]개, 혼거실 [redacted]개 등 [redacted]개 수용거실 운용 중이며 선풍기 [redacted]대 설치

○ 독거실의 경우 선풍기 또는 냉난방 공조기 등을 이용하여 8,358개 거실 냉방 중 [redacted]

< 독거실 현황 >

(단위 : 대)			
거실 수	선풍기 설치	냉난방 공조기 설치	미설치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혼거실은 사용 중인 모든 거실에 최소 1대 이상 운용 중이며 냉방 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수용거실 구조, 전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2대 이상 설치·운용 중임

< 혼거실 현황 >

(단위 : 대)					
거실 수			선풍기 설치		
계	2~4인실	5인실 이상	계	2~4인실	5인실 이상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1)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성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⑤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의견 및 이행계획

- 수용거실 구조와 수용인원 등 수용환경이 각 교정기관별로 달라 수용거실의 크기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선풍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교정기관에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 선풍기 설치 기준을 독거실과 5인 미만 거실은 거실 당 1대, 폭염에 특히 취약한 5인 이상 혼거실은 거실 당 최소 2대로 하고, 각 교정기관별 수용인원·전력수급 사정·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실 당 설치기준과 달리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장이 판단하여 시행
-
- 위 기준에 미달되는 많은 교정기관에 대한 '20년 상반기 내 추가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 재배정 완료 및 설치 중임. 끝.